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45호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흥군의회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후원행사에 사용 승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고흥군의회 명칭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후원하는 행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고흥군의회 포상 조례→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 명시(안 제16조 신설)

○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안 제17조 신설)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규정(안 제18조 신설)

○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안 제19조 신설)

○ 후원명칭 승인 관리대장 작성(안 제20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11. 21. ~ 2024. 11. 27.(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조례 제2024-　　호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를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상”을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포상업무 지침)”을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을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후원명칭 승인 대상 행사) ① 의장은 의회 후원명칭(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 로고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고흥군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징수 또는 기념품 제공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4. 기관·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8조(후원명칭 사용 승인)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안전대책 수립),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행사의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를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제16조(후원명칭 승인 대상 행사) ① 의장은 의회 후원명칭(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 로고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

	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고흥군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징수 또는 기념품 제공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4. 기관·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 설>	제18조(후원명칭 사용 승인)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안전대책 수립),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행사의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9조(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20조(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업무 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21조(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 ---------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고흥군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보험허가증 또는 증목등 사본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주최(주관)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참석인원	대상 :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형태		
특기사항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	행 사 현 황				승인일자	비 고
	행사명	주최 기관 단체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별지 제9호서식] 신설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고흥군의회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주최 (주관) 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참석인원	대상 :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 용 처	
	사용형태	

특기사항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	행 사 현 황				승인일자	비 고
	행사명	주최 기관·단체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참 고 자 료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 2019. 7.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행정안전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관련성 정도가 가장 높은 과 단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시상되는 행사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 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